

# 전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) 교통법규를 꼭 !! 준수합시다

## ● 원동기장치자전거란?

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**이륜자동차**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KW 미만)의 **이륜자동차** 또는 그밖에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 출력 11KW 미만)의 **원동기를 단 차를 말함** (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)

## ● 원동기장치자전거 주요 단속 항목 (도로교통법)

-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● 무면허, 음주 운전 시  | <b>형사처벌</b> (사업자는 무면허, 음주 운전 방조죄 처벌) |
| ● 역주행, 중앙선 침범   | <b>4만원 범칙금</b> 벌점 30점                |
| ● 인도 침범         | <b>4만원 범칙금</b> 벌점 10점                |
| ● 안전모 미착용       | <b>2만원 범칙금</b>                       |
| ● 제한속도(20km) 위반 | <b>2만원 범칙금</b>                       |
- ※ 한옥마을은 20km 이하 제한구역입니다.

## ● 전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) 종류



이륜 전동차



삼륜 전동차



사륜 전동차(4인용)



사륜 전동차(6인용 이상)

## ● 교통법규 준수 안전수칙

- 만16세 이상**,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**면허 소지자**에 한하여 **운행**할 수 있습니다.
- 인도와 중앙선을 침범**해서는 **안됩니다.**
- 역주행**을 하면 **안됩니다.**
- 안전장구**를 **꼭 착용**해야 됩니다.
- 제한속도(20km)** **준수**해야 합니다.



전주완산경찰서장



전주시장

세계를 바인다